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1939
----------	------

발의연월일 : 2017년 7월 25일

발 의 자 : 박중화, 우형찬, 김태수, 성중기,  
박진형, 김제리, 김인호, 최관술,  
신원철, 서영진, 장우윤, 황준환,  
강감창, 박성숙, 박마루, 신건택,  
이명희, 주찬식, 이숙자, 남재경,  
김진수, 최호정 의원(22명)

## 1. 주 문

- 의류, 시계, 한복과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전통시장 등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물류중심지로서 의류부터 다양한 수공업 위주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영위하고 있음
- 최근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인해 큰 비용부담을 강요받고 있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상 및 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의류만을 예로 들더라도 국가통합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이 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

### 3. 이 송 처

-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

전통시장 등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물류중심지로서 의류부터 다양한 수공업 위주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슴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인해 큰 비용부담을 강요받고 있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되었다.

국가통합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국가통합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국가통합인증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품목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수준이며, 이를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떠안게 되어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이다.

법제정 취지가 소비자의 안전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핸드메이드, 구매대행업체 등은 법 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700만 소상공인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법 시행이라며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상 및 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의류만을 예로 들더라도 국가통합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이 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의류, 시계, 한복과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해 줄 것과 궁극적으로는 동 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바이다.

2017. 7.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